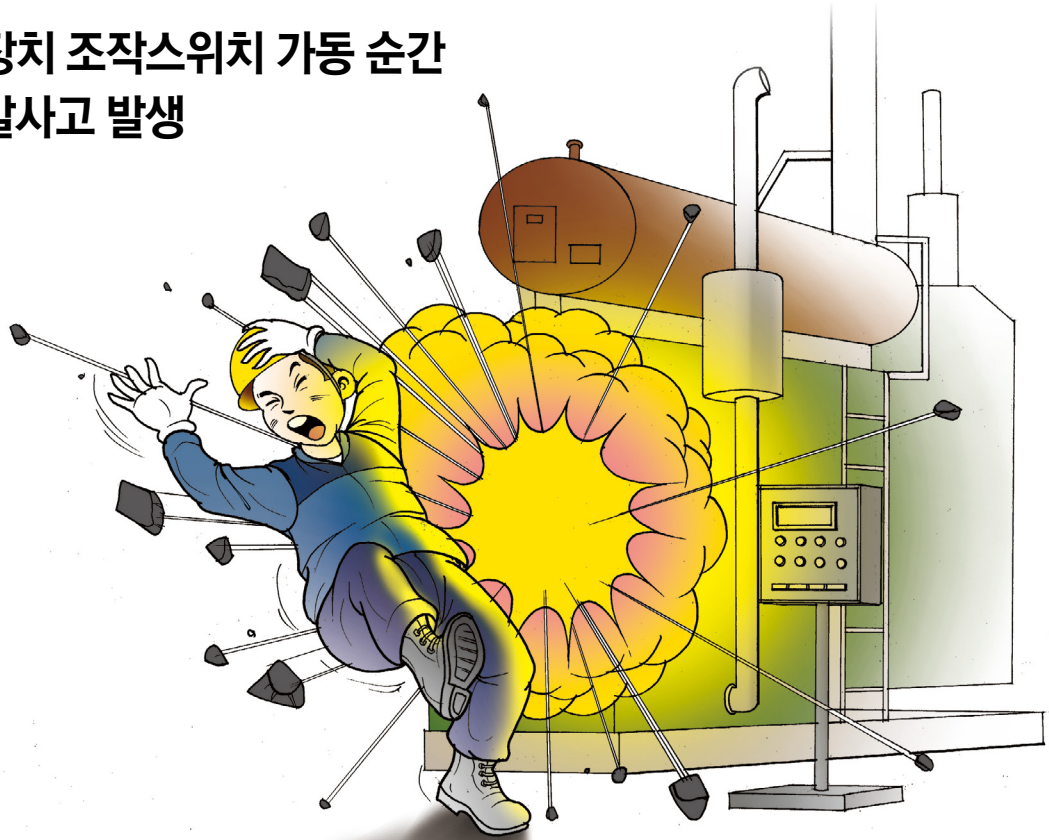




재해사례

소각로 점화장치 조작스위치 가동 순간 연소실이 폭발사고 발생



용어의 정의

- 유해물질 : 소각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이옥신류, 염화수소, 일산화탄소,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, 분진 등
- 부착물 : 퇴적 분진을 포함한 유해물질 등, 불필요한 이물질
- 습윤화 : 물을 뿌려 분진 등의 비산을 억제하는 방법

대상작업의 종류

- 소각재 등의 취급작업
 - 소각시설 운전시 발생되는 소각재, 검댕 및 기타 연소재 취급 작업
- 설비의 보수·점검 작업
 - 소각로, 집진기 등 설비의 보수·점검과 관련된 작업
- 설비의 해체업무와 관련된 작업
 - 소각로, 집진기 등 설비의 해체업무와 관련된 작업

폐기물 소각시설의 작업 근로자 안전대책 및 수칙



소각재 등 취급작업

- 특별안전·보건교육, 관리감독자의 지정, 발산원의 습윤화
- 건강관리
 - 소각시설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
 -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시 신속한 의학적 진단 및 조치 실시
- 여성근로자의 보호, 적절한 보호구(호흡용 보호구 등) 지급 및 착용



설비 보수 / 점검 등

-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
- 위탁업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방지 노력 실시



설비의 해체업무

- 해체대상 시설의 도면을 미리 해체사업주에게 제공
- 사업주는 해체사업주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착물 제거작업 실시
- 해체작업 실시 전 설비 내부에 부착된 유해물질이나 비산하기 쉬운 분진 등을 충분히 제거
- 작업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분리
-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
 - ※ 배기가스, 비산분진, 배수, 폐기물 등의 처리와, 유해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대해 해체시 사업주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



사업장 점검포인트



참고 법령 및 작성 기준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(관리감독자), 제24조 (보건상의 조치), 제27조 (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), 제31조 (안전·보건교육), 제43조 (건강진단)
- KOSHA GUIDE W-13-2012 「폐기물 소각시설의 작업관리 지침」

※ 해당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기술지침(KOSHA GUIDE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